

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자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534
----------	------

2025년 4월 25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- 발의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3월 31일 유만희 의원 (찬성 32인)
- 회부일자 : 2025년 4월 2일
- 상정일자 :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5년 4월 24일 상정· 의결(수정안 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유만희 의원)

1. 제안이유

-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("수권자")과 그 배우자에게 지원하고 있으나, 수권자 사망 시 당해연도 말 이후 배우자에 대한 의료지원 혜택이 중단되어 고령의 배우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.
- 독립유공자는 유공인정시기가 1945년 8월 14일이전으로 본인이 수권자인 경우가 극히 드물고, 현재 수권자 대부분이 자녀 및 손자녀 세대로 이미 고연령에 접어든 상황임.
- 「이에 수권자 사망 이후에도 그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에게 의료

지원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유족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현행 조례상의 표기 오류를 수정함(제2조)
- 나.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비 지원사업에 배우자를 포함하고, 기준에 지원을 받는 유족이 사망할 경우에도 그 배우자의 지원을 유지하는 규정을 명시함 (제3조제1항제4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Ⅲ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임영미)

1 개정안의 취지

- 현 제도상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(“수권자”)과 그 배우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. 그러나 수권자 사망 시, 그 배우자에게 제공되던 의료지원이 당해연도 말 이후 중지되고 있어 고령의 배우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었음.
- 이에, 본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비 지원사업에 배우자를 포함하고, 기존에 지원을 받는 유족이 사망할 경우에도 그 배우자의 지원을 유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고자 발의 되었음.

〈표〉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① (생 략)	제2조(정의) (현행 제1항과 같음)
제3조(지원사업) ① 서울특별시장 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.	제3조(지원사업) ① ----- ----- ----- 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서울 시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지원	4. ----- ----- ---- 지원 (그 배우자를 포함하 고 기존에 지원을 받는 유족이

현행	개정안
5.·6. (생략) ② (생략)	<u>사망할 경우에도 그 배우자의 지원을 유지한다)</u> 5.·6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
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

-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독립유공자법’)을 제정하여 지원을 실시해오고 있음.
- 또한, 서울시에서도 2013년부터 「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해 이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오고 있음.

가. 독립유공자 정의 및 지원제도

- 「독립유공자법」 제4조에서는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.

순국선열	일제의 국권침탈(國權侵奪)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, 그 공로로 건국훈장(建國勳章)·건국포장(建國褒章)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
------	--

애국지사	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, 그 공로로 건국훈장·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
------	---

- 또한 동법 제5조에서는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① 배우자, ② 자녀, ③ 손자녀(단,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), ④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로 규정하고 있음. 이처럼 독립유공자의 수권은 3세대까지만 가능함.
- 이에 독립유공자 본인, 본인이 사망 시 선순위 유족(수권자)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 보훈청에 일정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게 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여부를 심의해 독립유공자 및 수권자의 해당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게 됨.
- ‘25년 2월 말 기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전체 독립유공자는 8,971명(본인 및 유족 포함)으로 나타남.
- 독립유공자에게는 독립유공자법에 의해 보훈급여금(보상금, 사망 일시금 및 생활조정수당), 교육지원, 취업지원, 생업지원, 의료지원, 장기저리 대부, 양로지원, 요양지원 등이 지원되고 있음.

나. 서울시 독립유공자 현황 및 지원제도

- ‘25년 2월말 기준 서울시에는 2,240명의 독립유공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- 또한, 동 조례 제3조를 근거로 보훈명예수당, 조의금, 위문금, 의료지원, 생활지원수당 지급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.

「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(지원사업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.

1. 생존애국지사에게 월 10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
 2. 애국지사 사망 시 조의금 100만원 지급
 3. 3.1절, 광복절 기념일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위문금 각 10만원 지급 (직계후손이 선순위자일 경우 그 사촌이내 형제·자매를 포함한다)
 4.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서울시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
 5.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월20만원의 생활지원수당 지급
가.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
나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인 사람 및 「기초연금법」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
 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그 밖에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다. 개정안의 주요 내용 검토 : 의료지원 대상자 확대

-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법에 의해서 국비진료, 보훈병원 60% 감면 등의 기본적인 의료지원을 받게 됨.
- 서울시에서는 이와 별도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을 대상으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한 의료비 또는 약제처방비를 지원하고 있음.

〈표〉 서울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

- 사업내용 :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 등이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(입원비 포함),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급여비용 지급
- 지원대상 :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2,207명
 - ▶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며 의료급여 대상자는 제외
- 지정의료기관 : 33개 기관(시립병원 8개소, 시립병원 인근 약국 25개소)
- 지원예산 : 1,400,000천원
- '24년 의료비 지원 실적 : 총 26,500건 / 1,210,768천원
 - ▶ 진료비 (14,912건 / 706,438천원), 약제비 (11,588건 / 504,330천원)

- ‘25년 기준 서울시의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및 그들과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배우자가 대상이 됨.
- 그러나,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 사망으로 인해 자격을 상실할 시, 배우자는 당해연도까지만 의료비가 지원되게 됨. 이는 독립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의 연령대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고령인 이들의 배우자에게 수혜가 제한된다는 한계가 존재했음.
- 본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반영해 수권자(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)이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에 대한 의료지원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.
- ‘25년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은 1,400,000천원이며, ‘24년도에는 총 1,210,768천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남.

〈표〉 최근 3년간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 추진실적

구분	22년	23년	24년
지급대상(건)	26,269	30,666	26,500
지급액(천원)	1,043,606	1,263,142	1,210,768

- 재정분석담당관에서는 해당 사업의 지원자 확대에 의해 대략적으로 연간예산이 9,250천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함.
 - 단, 해당 추계는 본 조례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수권자의 배우자에 대한 별도 통계가 보유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추계가 어려워 참고로 작성한 수치로, 집행기관에서는 해당 추계보다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측함.

라. 집행기관 의견 : 수정가결

-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에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도 이미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어, 조례 개정을 통해 ‘선순위 유족(수권자)의 배우자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.
- 사망한 수권자의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를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, 의료지원의 승계에 따른 가족 간의 유대감 훼손, 의료지원 중단에 따른 당사자의 상실감 예방 등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.
- 다만, 지원사업 대상과 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 수정이 필요함.

3 종합의견

- 국가보훈제도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한 보상과 예우이며, 국가의 공동체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측면이 있음. 따라서 가입자의 기여를 기반으로 하거나 선별적으로 이뤄지는 여타 사회보장제도와는 다른 특성을 가짐.
- 동 조례안의 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경우, 그 유공인정시기가 1945년 이전이라는 시기적 특성과 3세대까지만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. 그러나, 현재 독립유공자 본인 및 수권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동 제도의 특성상, 2세대 수권자부터는 수권자 사망시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는 한계가 있음.
- 동 조례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반영해 수권자가 사망한 뒤에도 배우자에게 의료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예우를

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.

- 단, 해당 조례개정안으로 인해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비용 증가분을 추정하려면 선순위유족 배우자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나 국가보훈부 및 서울시 관련부서의 경우 별도 통계를 보유하지 않아, 단순 추정시 연간 9,25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수정안 요지

1. 수정이유

-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과 유족의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근거를 명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되, 의료비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의료비 지원의 대상을 ‘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’에서, ‘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, 그리고 유족의 배우자’로 수정하고 괄호 안의 항목을 삭제함(안 제3조제1항제4조).

VI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534 관 련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년 4월 25일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과 유족의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근거를 명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되, 의료비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의료비 지원의 대상을 ‘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’에서, ‘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, 그리고 유족의 배우자’로 수정하고 괄호 안의 항목을 삭제함 (안 제3조제1항제4조).

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1항제4호 중 “유족이”를 “유족, 그리고 유족의 배우자가”로,
“지원 (그 배우자를 포함하고 기존에 지원을 받는 유족이 사망할 경우에도 그 배우자의 지원을 유지한다)”을 “지원”으로 한다.

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<수정(제안)안 조문대비표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2조(정의) ① (생략)	제2조(정의) (현행 제1항과 같음)	제2조(정의) (개정안과 같음)
제3조(지원사업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.	제3조(지원사업) ①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제3조(지원사업) ① (개정안과 같음)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1. ~ 2. (개정안과 같음)
4.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서울시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	4. ----- ----- ----- ----- 지원 (그 배우자를 포함하고 기준에 지원을 받는 유족이 사망할 경우에도 그 배우자의 지원을 유지한다)	4.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, 그리고 유족의 배우자가 서울시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
5. · 6. (생략)	5. · 6. (현행과 같음)	5. · 6. (개정안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	② (개정안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4호 중 “유족이”를 “유족, 그리고 유족의 배우자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<신·구조문대비표>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① (생략)	제2조(정의) (현행 제1항과 같음)
제3조(지원사업) ① 서울특별시장 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 행한다.	제3조(지원사업) ① ----- ----- ----- 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독립유공자 및 그 <u>유족</u> 이 서울 시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 담금 지원	4. ----- <u>유족, 그리고</u> <u>유족의 배우자가</u> ----- -----
5.·6. (생략)	5.·6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